

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(요약)

농림수산식품부

1. 축산환경 개선

1. 차단방역, 환경관리,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제 도입

- 면허요건 : 일정기간 방역·안전·환경·경영 등에 관한 교육 이수

2. 축산업 등록제 강화

- 등록 축종 확대 : 소, 돼지, 닭, 오리 → 모든 우제류·조류
- 등록 농가 확대 : 사육시설 50~300㎡ 초과 → 50㎡ 초과
- 축산업 등록 기준 강화
 - 종축시설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
 -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토지 확보 의무화
- 적정 사육기준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및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지자체 제재 강화
 - * 기본과태료 상향조정(예, 1차 위반 : 3만원 → 10, 2차 위반 : 30 → 50, 3차 위반 : 100 → 200)
 - * 적정사육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가중처벌(예, 20% 밀식 : 기본 × 120%)

* 축산관련 사업비 지자체 배정시 축산농가 등록제 등록실태 및 준수사항 위반농가 조치실적 고려

3. 축사환경 평가기준 마련

- 농장HACCP·동물복지 기준, 축산농장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축사환경 평가기준 마련, 정책대상 선정 시 평가 결과 적용
- 차단방역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 컨설팅 지원 확대

4. 축산물 인증제 개편

-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 시범사업 추진
 - 인증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란계 농장에 우선 도입, 제도의 성공 가능성 타진 후 타 축종 등으로 확대
 - *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(2010. 7월), 시범평가(10월)
- 농장 HACCP 등 축산물 인증기준 변경
 -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가축법에서 규정한 농장 의무사항, 축사환경 평가기준,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농장 HACCP 기준 보완

- 농장 HACCP 기준을 반영하여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변경, 상위 단계 인증시 하위단계 인증제 표시권 부여
 - 인증 단계 : 농장 HACCP → 무항생제/동물복지형 축산물 → 유기 축산물
 - 농장 HACCP 정착 후 환경친화축산 농장 지정제 폐지

5.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

-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농협, 축산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
 - 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시상 및 홍보, 농가 교육·컨설팅 자료로 활용
- 농장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담 컨설팅단 구성·운영

2. 평시 방역체계 개선

1. 축산농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

-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신고 의무화,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(5일) 준수
- 관리 미흡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삭감 등 제재 강화

2.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

- 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(탑승자 포함)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확대
 - 가축·원유·동물약품·사료·가축분뇨 운반차 → 기존, 수의사, 인공수정사,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
- ②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
 - 주소지 관할 시·군에 가축거래 상인을 신고하여 신분증 발급
 - 신분증 없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거래내역 기록관리 미흡시 과태료
- ③ 의무사항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 - 방역·검역 의무사항을 위반,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시설 폐쇄 명령, 보상금 삭감 등 추가

3.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역추진 실태 점검 강화

- 축산농장 D/B 구축, 점검대상 선정 프로그램(중복 점검 방지 등) 개발 등을 통한 상시 점검 강화
 - 국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(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)
-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 투입, 시범 실시 후 확대

4. 축산농가의 외국 여행후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등 국경검역 강화

- ① 축산농가 악성가축질병 발생지역 여행 자제,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·항만에 서 검역관에 신고 의무화
- ② 축산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(5. 10~)
 - 출입국관리소 협조로 축산농가 입국 시 신고 촉구 문자메시지 발송, 발생 지역을 방문한 경우 소독 조치 및 방역교육

3. 질병 발생시 방역체계 개선

- 1. 신고 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(고시),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,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완
 - 초동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보완
 - 예) 경계단계 조치사항을 주의단계 조치사항으로 하향 조정 등
 - “기반 축산시설”에 대한 통제와 구제역 확산 원인이 되는 “축산관련 종사자”에 대한 방역관리 규정 추가
 - 농장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

는 위기단계 제한조치 신설

- * 기반 축산시설 : 국가 및 지자체 종축장, 농협 개량사업소 등
- * 축산관련 종사자 : 사료·동물약품·수의사·인공수정사·AI센터·컨설팅·축산기자재업체·HACCP 관계자 등

2. 지자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 훈련 등 실시(매년)

-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

3. 유사시 대비 방역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 태세 구축 여부 점검

- 분기별로 소속기관 직원의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, 지자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실적 등 점검
- * 분기별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시·도, 시·군·구에 지시

4.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고, 지자체 축산 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질병발생시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

- 한우 : 서산, 무주 → 12년까지 2개소 (경북, 대관령) 추가 조성
- 젃소 : 경기 고양 → 11년까지 2개소(영

양, 천안) 추가 조성

- 돼지·닭·오리 : 축산과학원이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, 종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 구축

4. 피해 보상체계 관련 제도개선

1.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·수매 관련 제도 개선

- 새끼돼지(30kg 이하) 살처분 보상금 세분화 : 포유자돈(4주 이내), 이유자돈(4~8주), 새끼돼지(9~10주)
- 이동제한 및 폐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, 인공수정사 등 및 방역대내 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
- 이동제한 가축의 신속한 수매 및 농가

의 방역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SOP에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지침 신설

5. 농수산물식품 검역·검사기관 통합

1. 농식품부 3개 소속기관(수의과학검역원, 식물검역원, 수산물품질검사원)을 통합하여 일관된 방역·검역·검사 체계 구축

- 공통부서 인력은 현장에 재배치(55명 증원효과 발생)하고, 시설·장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성 제고
 - ※ 인력 : 1,289명(현 정원 유지) - 수과원 591명, 식검 432명, 수검원 266명
- 농식품부는 정책기능만 수행, 방역·검역·검사관련 집행업무를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
- 각 시·도에 방역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

〈본청〉 3부, 27과 → 4국, 21과, 1연구원

○ 청장 : 고위공무원(가급)

〈지방청〉 24지원, 2재배관리소 → 6지방청

○ 지방청장 : 고공단 나급(3지방청), 3~4급(2지방청), 4급(1지방청)

